

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. 8. 18 선고 2020가단32688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삼용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강

담당변호사 성초록

변 론 종 결 2021. 7. 7.

판 결 선 고 2021. 8. 18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9. 12. 16. 접수 제230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

가. 당사자의 주장

(1) 원고의 주장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“이 사건 토지”라 한다)은 그 명의를 C의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, 실제로는 원고의 소유이다.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C와 통모하여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바,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불법행위로서 무효이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(2) 피고의 주장

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였던 C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.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.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에게 넘어가기 이전에는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, 가사 D이나 C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,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바 없는 이상,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.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다음으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불법행위로서 무효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, 피고가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가 원고에게 있다는 점, ②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등을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, 가사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,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.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주완

(별지)

부동산 목록

1. 충청남도 예산군 전 1693㎡
2. 충청남도 예산군 대 1569㎡
3. 충청남도 예산군 대 269㎡. 끝.

